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령친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38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영 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 ..	3
2.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 포함	7
3. 고령친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11
※ 참고자료	16
1.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개요	16
2.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개요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6. 3. 20.
3. 회 부 일: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 및 안전관리 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은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안전,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나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생활체육시설과는 별도로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인에게 특화된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애인 등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4항 및 제4조의2제2항제6호 신설).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특화된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도모함(안 제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4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다. 검토사항

현행법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방역 및 예방조치 관련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노력 의무,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은 체육시설의 이용 과정에서 안전 및 이용 편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노인과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및 노인, 장애인 체육시설의 지원·이용에 관한 근거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시니어 친화형’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비용을 지원(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노인,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관련 현행 법률 조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2) 시니어 친화형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개요는 [참고자료 1] 및 [참고자료 2] 참조

또한, 개정안은 ‘체육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취약계층의 개념 또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³⁾.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취약계층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노인 및 장애인과는 달리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체육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3) 참고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11호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10의2.

11.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 12.

②~④ (생략)

2.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 포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의2제2항제6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③ ~ ⑤ (생략)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체육시설 이용 관련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현행법⁴⁾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8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

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에 제1차 기본계획, 2021년에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음.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내역]

연번	기본계획 차수	수립 시기	계획 기간
1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2016. 5.	2016년 ~ 2020년
2	제2차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1. 2.	2021년 ~ 2025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중장기 안전관리 정책,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 체육시설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장애인 복지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체육시설 이용 관련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6년에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 총인구 및 고령자 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총인구	65세 이상	비중 ¹⁾	노년부양비 ²⁾	노령화지수 ³⁾
2000	47,008	3,395	7.2	10.1	34.3
2010	49,554	5,366	10.8	14.8	67.2
2020	51,836	8,152	15.7	21.8	129.3
2025	51,685	10,514	20.3	29.3	199.9
2030	51,306	12,980	25.3	38.0	312.0
2035	50,825	15,208	29.9	47.7	406.7
2040	50,059	17,151	34.3	59.1	442.2
2050	47,107	18,908	40.1	77.3	504.0
2060	42,302	18,682	44.2	90.3	636.9
2072	36,222	17,271	47.7	104.2	726.8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주: 1) 비중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0년 8.3%에서 2025년 3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⁵⁾.

장애인과 노인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 시 사고 위험이 더 크고, 안전사고 예방과 맞춤형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 변화 추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기존 어린이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⁶⁾이 국회를 통과(2026.3.31.)하여 2026년 7월 29일 시행⁷⁾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10년 8.3%→'20년 24.2%→'25년 34.8%(출처: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6) 의안번호 제2213066호,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장애인·노인 안전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3. 고령친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해당 시설에는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하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④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⑤ 고령친화 체육시설의 지역 주민에 대한 개방 및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6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및 제9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6조의2(고령친화 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노인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 체육시설에는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

	<u>여 시설·기구 및 운영방식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u>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u>제5조 및 제6조에</u>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제5조제1항 및 제6조에</u>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u>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u>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6조의2에</u>----- ----- ----- ----- -----.

다. 검토사항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초고령 사회⁸⁾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

으므로 생활체육시설과는 별도로 노인 친화적인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이 포함된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운영방식의 개선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친화 체육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고, 해당 시설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 노인의 체육활동 기반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고령친화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안 제6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특정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행 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 체육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 향후 계층별 요구사항 반영 요청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② 파크

8)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됨.

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노인건강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⁹⁾은 2023년에 재원과 함께 지방이양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므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임.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친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6조의2 제4항)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생활체육시설 사용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은 해당 지방정부 조례로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22대 국회의 노인특화체육시설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9)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지방체육시설(체육관, 종목별 시설),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운동장생활체육시설(잔디, 우레탄트랙 조성 등), 레저스포츠시설(번지점프 등) 지원
- 지방이양: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2단계에 포함되어 2023년도에 지방이양됨

[노인특화체육시설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개정안 (의안번호)	주요 내용(조항)	발의일 (대표발의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7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25. 1. 16. (송기헌의원)
체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75)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등).	'25. 1. 16. (송기헌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76)	○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정의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 노인특화 체육시설: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을 갖추어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5. 1. 16. (송기헌의원)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1.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초고령화 사회 대응) 고령층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을 통해 어르신 스포츠 활동 장려 및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도모
- (생애주기 맞춤 지원) 수영장·체육관을 기본으로 구성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 지원유형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실내체육시설인 ‘시니어 친화형’ 지원모델 신규 개발·보급(‘23년~)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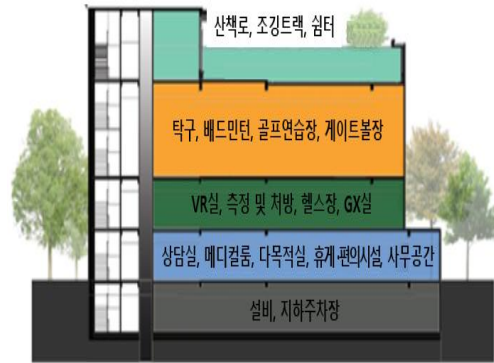
- (주요내용) 파크골프장, 게이트볼 등 시니어 친화 체육시설과 건강측정실·메디컬룸 등 건강증진 특화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실내체육시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일부 지원
- (지원방식)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전년도 사전공모*
 - * (절차) 공모사업 설명 → 지방자치단체체 안내 → 신청접수 → 평가·발표
- (지원규모) 1개소당 4년간 30억 원*, 정액지원
 - * 1년 차 2억 원(설계비) 교부 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현황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산	6억	48억	205억	331억
지원량	신규 3개소	신규 8, 계속 3개소	신규 19, 계속 10개소	신규 14, 계속 24개소

□ 시설유형 및 기능

지역 특성	• 높은 고령화율 • 고령화 증가
기본 시설	• 체육관 (700m²) • GX룸(요가, 댄스 등) (200m²) • 건강측정 및 운동처방실 (200m²)
권장 시설	• 조깅트랙, 배드민턴, 라지볼탁구,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등 노령 친화 체육시설 • 메디컬룸 (200m²) • 치매예방 상담실 (60m²) • VR 가상체험실(고령친화 스마트 운동기, 재활치료기 등) (140m²)
기타	• 공용면적 • 카페, 작은 영화관 등 기타시설 • 노인스포츠지도사 또는 운동처방사를 통한 건강 관련 전문서비스 제공



권장 규모 2,500m²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 사업개요

- (목적) 시군구 단위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
-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 환경을 구축하되,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 확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 “반다비체육센터”



【 반다비 】

-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마스코트로, 반달가슴곰은 의지와 용기를 상징. '반다'는 반달의 의미를, '비'는 대회를 기념한다는 의미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인 “반다비”를 시·군·구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의 명칭으로 활용

- 시·군·구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유산(레거시)**임을 밝히고
- 평창패럴림픽 대회기간 전국민의 사랑의 받았던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시설의 인지도를 제고**

□ 사업개요

- (지원유형) ①체육관형(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GX실 등으로 구성), ②수영장형(수영장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헬스장, 다목적룸 등으로 구성), ③종목특화형(볼링, 보치아, 골볼, 컬링 등)
- (지원방식)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전년도 사전공모*
 - * (절차) 공모사업 설명 → 지방자치단체 안내 → 신청접수 → 평가·발표
- (지원규모) 1개소당 4년간 40억 또는 50억 원*, 정액지원
 - * 26년 기준: 체육관형·종목특화형(40억원, 수중운동실 추가시 +10억원), 수영장형(50억원)
 - 1년 차 3억 원(설계비) 교부 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지원 현황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산	561억	326억	285억	167억
지원량	신규 12개소 계속 26개소	신규 11개소 계속 24개소	신규 4개소 계속 29개소	신규 5개소 계속 20개소

□ 시설유형별 개소수

구분	체육관형	체육관+수중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종목+수중	합계
개소 수	33	34	29	7	5	108

* 종목특화형 12개소: 볼링 3, 보치아 3, 배드민턴 2, 빙상 2, 골볼1, 컬링 1, 배구 1, 테니스 1(복수 종목 2개소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